

부산직할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사 보고서

92. 12. 14

도시위원회

1. 심사 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2년 11월 27일 남구청장 제출

나. 회부 일자 : 1992년 11월 28일

다. 상정 일자 :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6차 도시위원회

(1992년 12월 11일)

2. 제안 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지역교통과장 조재구)

가. 제안 이유

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법에 의한 수입으로 구단위
주차장 시설 확충, 관리 및 도로상 주차 질서 확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
위함.

나. 주요 골자

○ 세 입

-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
(공영주차장 수입, 일반회계 전입금, 시보조금, 주차위반과태료 수입)
- 주차장법 제8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 관련 관리 수탁자 부담금
- 주차장법 제24조의 2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금
- 기타 수입

○ 세 출

- 주차시설 확충, 관리에 필요한 경비
- 주.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
- 기타 주차 관련 사업

3.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(전문위원 노영규)

○ 주차장법 제21조의 2의 제1항에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동법 제21조의 제4항의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된 사항에 의거 조례를 제정토록 한 것임.

○ 주차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 관리 및 운용을 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법 제21조의 2의 제2항 내지 제3항과 동법 제21조의 제5항 내지 제6항에 세입과 세출의 관리 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, 답변 요지

질의위원	답변 공무원	질의요지	답변요지
이계일 위원	지역교통과장 조재구	·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지역 교통과에서 단속과 돈을 받아 들이겠다는 뜻이니?	·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목적에 맞도록 관리 운영을 할 것임.
김봉곤 위원	"	· 단속하고 돈을 받아 들이는데 대한 특별한 법적인 제제가 있느냐?	· 전에는 일반회계에 들어가서 사실상 일반 재원화 되었지만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그 사용 목적에만 쓰도록 되어 있음.
박남서 위원	"	· 조례안 제6조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대한 설명	· 예비비 관계는 일반회계에 준해서 만들어졌으며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란 예를들면 주차빌딩을 세운다든지 주차금지선 또는 주차허용선 짓는데 문제가 발생했을시 예산이 조금 모자랐을때 그런 사항에 사용되며 재해관계의 예비비 성격과는 사안이다름.

4. 토론 요지 : 없음

5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
6. 소수 의견 요지 : 없음